

해 양 수 산 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양양군

관 련 자 양양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6. 2. 1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양양군 ○○○○○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양양군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2014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으로 ‘연어가공시설사업(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을 선정하였으며

당초 사업부지가 양양군 계획관리지역으로 오폐수 발생 등 공장설립에 애로가 있어 사업을 이월, 2015년 ○○○읍에 위치한 ○○○ 제○○○ ○○○단지내 부지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연어가공시설사업 현황

사업자	위 치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주)○○○○○○ (○○○)	(당초) ○○○면 ○○○로 000 (변경) ○○○읍 제0 ○○○농공단지내	399.56㎡	787	236	236	315

1. 보조금 교부조건 부여 부적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201호)」 제17조 및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의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시·군·구)가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조건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양군은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양군은 2014년도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 (주)○○ ○○○(대표 ○○○)을 보조사업자로 하며,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이 근저당 설정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전협의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2015. 8. 6. (주)○○ ○○○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이 근저당 설정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건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사업자와의 협의를 하여야 하나, 협의 없이 2015. 9. 14. 교부결정시에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이 부기등기 설정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교부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2. 자부담 확보 없이 선금급 지급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291호)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공사종류별 또는 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자부담 전액을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양양군 ○○○○과는 (주)○○ ○○○의 자부담 315백만원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에서 양양군으로 신청한 보조금 선금급(293백만원) 신청서 (접수 양양군 ○○○○과-0000호, 2016. 0. 00.)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보조금은 연어가공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체결한 건축, 설계 등의 계약의 선금급으로 2016. 5~6월 중 사용, 자부담은 HACCP 관련 시설, 자재비 등 구입을 위해 2016. 5~9월 중 사용한다고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양양군은 (주)○○ ○○○가 자부담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금급 교부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보조사업자인 (주)○○ ○○○가 자부담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¹⁹²⁾하지 않고, 2016. 5. 16. 지출 품의를 통해 보조금 선금급 293백만원을 지급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보조사업자인 (주)○○ ○○○의 보조금 통장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조금 선금급을 모두 집행한 2016. 6. 16. 이후에 자부담분이 확보(6.22. 200백만원, 7.22. 5백만원, 8.19. 15백만원, 9.28. 100백만원) 되었다.

[표 2] 연어가공시설사업 계약 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공사(용역)명	계약금액	선금신청액	교부액	집행계획
보조금	계	479,778	292,516	292,516	'16.5~6월 중 지급
	설계용역	9,625	9,625	9,625	
	원가계산용역	2,000	2,000	2,000	
	건축공사	348,048	208,828	208,828	
	기계공사	57,030	34,218	34,218	
	전기공사	63,075	37,845	37,845	
자부담	HACCP 관련 시설	393,260	-	-	'16.5~9월 중 지급

192) 보조사업자인 (주)○○ ○○○의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결과 보조금 선금급 입금일인 2016. 5. 16.에 통장잔고 2,094원으로 자부담 314,700천원을 확보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양양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연어가공시설’ 사업 완료 후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근거당권 설정 등 권리 보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